감 사 보 고 서

- 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 -

(공익감사청구)

2019. 10.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2. 감사중점 및 대상 ····· 3

3. 감사실시 과정 ····· 3

4. 감사결과 처리 ····· 3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 4

Ⅲ. 감사결과 ····· 6

1. 감사결과 요약 ····· 6

2. 처분요구 사항 ····· 7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 대상사업 선정 부적정(주의) ····· 8

3. 종결처리한 사항 ····· 14

Ⅳ. 감사실시 여부 검토결과 기각처리 사항 ····· 15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청구인(A 등 362명)은 천안시와 ○○이 공동 추진[1]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2] 진행 과정에서 사업예정부지 선정 절차 위반과 위 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 사업 선정 등에 문제점이 있다며 2018. 11. 16.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19. 8. 30. 청구사항별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예정부지 선정 절차 위반과 ② 위 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 사업 선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나머지 6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2019. 8. 30. 청구인 대표에게 감사실시 여부를 통보)

< 감사청구 요지 >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 설치 사업 추진 관련

① 분뇨처리시설 사업예정부지 선정 절차 위반 관련[감사실시]

- 천안시가 위 분뇨처리시설 사업예정부지에 대해 고시 등을 통해 행정예고하지 않고 "설치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됨

② 분뇨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 대상사업 선정 관련 [감사실시]

- 환경부는 천안시가 위 분뇨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천안시의 위 시설 설치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국고보조금 계 1,854백만 원을 교부

1) 사업관리: 천안시, 사업시행주체: ○○
2) 사업기간(총사업비): 2015년 5월 ~ 2021년 12월〔200억 원(국비 140억 원, 지방비 20억 원, 자부담 40억 원)〕, 부지: 천안시 ◇구 일원(약 41,758㎡)

③ “설치 타당성조사”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예산 낭비 관련[감사 미실시]

■ (미실시 사유) “설치 타당성조사”에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없음

④ 국고보조금 미집행에 따른 국고보조비율 감액 미조치 관련[감사 미실시]

■ (미실시 사유) 환경부는 천안시가 이미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미집행함에 따라 위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을 추가 배정하지 않음

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조치계획 미이행 관련[감사 미실시]

■ (미실시 사유) 천안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조치 계획을 이행

⑥ 분뇨처리시설 사업계획 변경 부당 승인 관련[감사 미실시]

■ (미실시 사유) 천안시는 충청남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함

2.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3] 신청서 허위 작성 관련[감사 미실시]

■ (미실시 사유) 천안시가 사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천안시의 분뇨처리시설 불허가 약속 미이행 관련[감사 미실시]

■ (미실시 사유) 천안시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금지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음

※ 감사 미실시의 구체적인 이유 등은 Ⅳ. “감사실시 여부 검토결과 기각처리사항” 참고

3) 사업시행주체: 천안시, 사업예정기간: 2017년 ~ 2019년, 사업부지: 천안시 ◇구 일원 예정(총사업비 52억 원)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사업예정부지의 선정과 위 시설 설치 관련 국고보조사업 선정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천안시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2019. 9. 2.부터 같은 해 9. 6.까지 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받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환경부의 답변서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9. 11. 20.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4]

1.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 현황

- 위　　치: 천안시 ◇구 일원(41,758㎡)
-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140억 원, 지방비 20억 원, 자부담 40억 원)
- 처리방법: 바이오가스화(자원화시설*)

  * 가축분뇨처리방법에는 정화처리 방식과 자원화 처리방식(액비, 퇴비화, 바이오가스화)이 있으며, 천안시의 경우 사업추진 초기 퇴비화(자원화)방식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바이오가스화(자원화) 방식으로 처리공법 변경(2018. 5. 21.)

- 사업예정기간: 2015년 5월 ~ 2021년 12월
- 사업관리·감독: 천안시　　■ 사업시행·운영주체: ○○
- 지원유형: 축산업협동조합이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주체로서 기능하는 유형[5](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유형)

2.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년 사업비			2016년 사업비			2017년 사업비			2018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고보조 사업신청일	2014. 4. 11.			2015. 3. 26.			2016. 3. 31.			2017. 4. 4.		
사업예정부지	◇구			□구			◇구					
설치 타당성조사	미실시			실시			실시					
설치 타당성조사 검토	미검토(금강유역환경청)											
예산(환경부)	354	51	101	1,500	214	428	-					
교부액(천안시)	354	51	101	1,500	214	428	-					
집행액(○○)	-	-	-	-			-					

주) 2015년 사업비는 2019. 7. 1. 현재 ○○이 보유 중이며 2016년 사업비는 천안시가 보유 중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청구사항 관련 주요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5)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유형에는 ①환경순환형, ②바이오가스화 시설, ③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등이 있으며 지원유형마다 사업주체, 사업목적,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등이 각기 다름

3. 추진 경과

○ 2014. 4. 11.: 2015년도 분뇨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 대상 신규사업 신청(천안시→환경부)

○ 2014. 5. 9.: 2015년도 분뇨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금강유역환경청→환경부)

***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라 한다)은 천안시의 경우 "설치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검토의견 제출**

○ 2014. 6. 13.: 2015년도 환경부 예산요구서 제출*(환경부→기획재정부)

*** 천안시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 신규사업으로 선정**

○ 2015. 3. 26.: 2016년도 분뇨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 대상 계속사업 신청(천안시→환경부)

○ 2015. 6. 5.: 2016년도 환경부 예산요구서 제출*(환경부→기획재정부)

*** 전년도에 이어 천안시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 계속사업으로 선정**

○ 2015. 12. 4.: 2015년도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관련 국고보조금(354백만 원) 교부(금강청→천안시)

○ 2016. 3월 ~ 2018. 2월: 분뇨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실시(○○)

- ◇구 지역에 대해 실시(2016년 3월)하였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예정부지를 ◇구로 변경하여 추가 조사 실시(2017년 1월 ~ 2018년 2월)

○ 2016. 12. 8.: 2016년도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관련 국고보조금(1,500백만 원) 교부(금강청→천안시)

○ 2017. 11. 15.: 분뇨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검토·확인 요청(천안시→금강청)

○ 2018. 5. 21.: "설치 타당성조사" 관련 최종검토·확인 완료통보(금강청→천안시)

○ 2019. 8. 8.: 분뇨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요약

청구인은 천안시가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분뇨처리시설 설치 관련 사업예정부지를 선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또 위 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 타당성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위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교부되었다며 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 천안시가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예정부지를 선정하였다는 청구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천안시와 ○○이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설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군에 위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견학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천안시가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위 사업예정부지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종결처리하였다.

그리고 “설치 타당성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위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교부되었다는 청구사항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 이하 “분뇨처리시설 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경우에만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설치 타당성조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천안시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부적정하게 선정하여 국고보조금 계 1,854백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 관리지침 등에 위배되게 “설치 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한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에 주의요구하였다.

2. 처분요구 사항

명세: 별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 대상 사업 선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환경부

조 치 기 관 환경부

내 용

1. 업무 개요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이하 “분뇨처리시설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별표] “설치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 및 국고보조 대상 사업 선정 현황”과 같이 2014. 4. 11. 천안시로부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 설치 관련[6] 국고보조 대상 사업 신청을 받고 위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환경부의 국고보조 대상 신규사업(2015년도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2014. 6. 13.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 한다)에 위 사업비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등 두 차례(2014. 6. 13., 2015. 6. 5.)에 걸쳐 위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국고보조금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

6) 사업관리: 천안시, 사업시행주체: ○○(이하 “○○"이라 한다), 사업기간: 2015년 5월~2021년 12월, 총 사업비: 200억 원(국비 140억 원, 지방비 20억 원, ○○ 40억 원), 사업부지(면적): 천안시 ◇구 일원(약 41,758㎡), 처리용량: 150㎥/일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구 분뇨처리시설 관리지침(환경부 지침, 2016년 9월 6차 개정되기 전의 것) 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 2. (설치 타당성조사) 가항 · 마항· 자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 유무, 설치장소 등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조사한 후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타당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유역환경청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 “분뇨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신청 안내”[7]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위 국고보조 대상사업 신청 관련 검토의견을 받고 민원발생 해소 완료, “설치 타당성조사” 실시 등 사업준비가 완료된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하여 매년 6. 30. 까지 기재부에 관련 사업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재부)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부지확보, 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 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 타당성조사” 완료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은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기재부에 관련 사업예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2014. 3. 4. 시행(유역총량과-450), 2015. 3. 5. 시행(유역총량과-493)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2015년도 국고보조 대상 사업 선정 관련

그런데 환경부는 2014. 4. 11. 천안시로부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2015년도 국고보조 대상 신규사업 신청'〔사업예정부지: 천안시 ◇구(37,290㎡)〕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5. 9.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사업 신청의 경우 부지확보와 설치 타당성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8]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검토의견을 받았는데도 위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환경부의 '2015년도 국고보조 대상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같은 해 6. 13. 기재부에 위 사업비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354백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자 금강청으로 하여금 2015. 12. 4. 천안시에 국고보조금 354백만 원을 위 사업비로 교부하도록 하였다.[9]

나.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2016년도 국고보조 대상사업 선정 관련

또한 환경부는 "3항 가"와 같이 천안시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 신규사업'으로 부적절하게 선정한 뒤 2015. 3. 26. 천안시로부터 또다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도 국고보조 대상 계속사업 신청'〔사업예정부지: 천안시 □구(29,841㎡)〕을 받았으나, 위 사업예정부지는 당초 국고보조금 신청(◇구) 때와 다른 지역으로 변경[10]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안시가 △△을

---

8) 천안시는 2014. 4. 11. '2015년도 분뇨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신청' 당시 "설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금강청으로부터 "설치 타당성조사" 검토·확인도 받지 않음

9) ○○은 2015. 12. 15.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405백만 원(국비 354백만 원, 지방비 51백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교부일로부터 1,294일이 지난 2019. 7. 1.까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354백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

10) 구 분뇨처리시설 관리지침에 따르면 "설치 타당성조사" 시 관련 법규상 분뇨처리시설 입지에 문제가 없는 곳을 사업예정부지로 선정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천안시는 "설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2014. 4. 11. 환경부에 사업 신청을 하여 사업신청서상의 사업예정부지(◇구)가 관련 법규상

통해 위 사업예정부지인 □구 지역에 대한 “설치 타당성조사”만 실시(2014년 7월)하고 용역보고서만 받은 상태였으며(2014년 12월) 금강청으로부터 위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토·확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위 사업을 환경부의 ‘2016년도 국고보조 대상 계속사업’으로 선정한 뒤 2015. 6. 5. 기재부에 위 사업비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1,500백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자 금강청으로 하여금 2016. 12. 8. 천안시에 국고보조금 1,500백만 원을 위 사업비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천안시는 국고보조금 계 1,854백만 원을 두 차례(2015. 12. 4., 2016. 12. 8.)에 걸쳐 교부받았으나 주민반대 및 사업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2018. 5. 21.까지 “설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지 못해[11] 실시설계 등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국고보조금 계 1,854백만 원이 2019. 7. 1.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내용을 수용하면서 "설치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토·확인이 완료된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악취 민원 예방 및 수질개선 등을 위해 분뇨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이 긴급히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최소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실적 등 사업진행 경과를 검토하여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보전관리지역에 해당되어 분뇨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하자 2015. 3. 26. 환경부에 ‘2016년도 국고보조 대상 계속사업’ 신청서에는 □구 일원으로 사업예정부지를 변경하여 기재

11) 천안시는 기존 분뇨처리시설과의 중복·주민반대 등의 사유로 사업예정부지를 3차례 변경함에 따라 〔① ◇구(보전관리지역으로 분뇨처리시설 설치 불가) → ② □구(기존 분뇨처리시설과 중복) → ③ ◇구(주민반대) → ④ ◇구(2019년 9월 현재 사업추진 중)〕“설치 타당성조사”를 재실시하였으며 2018. 5. 21.에서야 금강청으로부터 ◇구 지역에 대한 “설치 타당성조사” 검토·확인 완료 통보를 받아 해당 부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

서는 사업간 내역조정을 통해 예산의 이용·불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환경부장관**은 앞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위배되게 “설치 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신청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설치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 및 국고보조 대상 사업 선정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 국고보조 대상 사업 신청일 (국고보조 예산 신청 금액) (사업구분)	2014. 4. 11. (6,790) (신규사업)	2015. 3. 26. (9,800) (계속사업)	2016. 3. 31. (5,318) (계속사업)	2017. 4. 4. (5,318) (계속사업)	2018. 3. 26. (7,700) (계속사업)
■ 사업예정부지(3차례 변경) (변경사유)	◇구 (보전관리지역으로 부적정)	□구 (기존 분뇨처리시설과 중복)	◇구 (주민반대)		◇구 (사업추진 중)
■ 설치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 (실시 연월)	미실시 (-)	실시 (2014년 7월)	실시 (2016년 3월)		실시 (2017년 1월)
■ 설치 타당성조사 검토·확인 완료 여부(금강청)	검토·확인 미완료				검토·확인 완료 (2018. 5. 21.)
■ 환경부의 예산요구서 제출일 (천안시 사업 선정 여부) (예산 반영액)	2014. 6. 13. (신규사업으로 선정) (354)	2015. 6. 5. (계속사업으로 선정) (1,500)	천안시 선정 제외		
■국고보조금 교부일 (금액)	2015. 12. 4. (354)	2016. 12. 8. (1,500)	미교부	미교부	미교부

주:1. 환경부는 2014. 6. 13. 천안시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해 2차연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예산을 반영

2. 구 분뇨처리시설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업예정부지에 대해 “설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규상 분뇨처리시설 입지에 문제가 없고 부지 취득이 용이하며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천안시는 “설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설치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신청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도 주민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예정부지를 3차례 변경하였으며 2018. 5. 21. 금강청으로부터 “설치 타당성조사” 검토·확인 통보를 받고 나서야 ◇구를 사업부지로 선정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 등 사업을 추진

3. 환경부는 천안시로부터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위 사업 관련 국고보조 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3차 이후에는 “설치 타당성조사” 미완료 및 이미 교부된 보조금 미집행 등의 사유로 천안시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관련 예산도 반영하지 않음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3. 종결처리한 사항

가.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예정부지 선정 절차 위반 관련

청구인은 천안시가 주민에게 사업예정부지를 예고하지 않고 “설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예정부지를 부당하게 선정하였다며 감사를 청구(2018. 11. 16.)하였다.

구 분뇨처리시설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업부지 선정 시 예정부지를 예고하고 사전에 후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지침 등의 관련 규정에 예정부지의 예고 시기·방법 및 주민의견 반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천안시와 ○○은 2017년 1월 ~ 2018년 2월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 “설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두 차례(2017. 3. 24., 2017. 4. 8.)에 걸쳐 ◇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예정부지를 예고하였고 2017. 4. 18. 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강원도 △군에 위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는 등 천안시가 위 지침 등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청구사항을 종결처리하였다.

Ⅳ. 감사실시 여부 검토결과 기각처리 사항

구분	청구 요지	기각 사유
1	○ 설치 타당성조사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예산 낭비 관련 - 국고보조금으로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 용역 실시 후 예정부지가 변경되어 “설치 타당성조사”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낭비	○ ◯◯은 3차례에 걸쳐 분뇨처리시설 사업예정 부지에 대한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 3차례 모두 ◯◯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20조에 따라 종결처리
2	○ 국고보조금 미집행에 따른 국고보조비율 감액 미조치 관련 - 환경부는 천안시가 '2016년도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1,500백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하고 있는데도 - 위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미감액	○ 환경부는 천안시가 2016. 12. 8.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1,500백만 원을 이월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 2019. 7. 1. 현재까지 천안시에 위 사업비 관련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지 않는 등 △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20조에 따라 종결처리 * 청구인은 국고보조금 1,500백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 결과, 국고보조금 계 1,854백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
3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에 제출한 조치계획 미이행 관련 - 천안시는 권익위에 위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미이행	○ 천안시는 권익위에 제출한 조치계획에 따라 2018. 7. 20. 위 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 - 또한 천안시는 위 조치계획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없어 △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20조에 따라 종결처리

구분	청구 요지	기각 사유
4	○ 분뇨처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관련 - 천안시는 “설치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충청남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 충청남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음	○ 충청남도는 천안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받았으나 - 금강청이 “설치 타당성조사” 검토가 완료된 후에 협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지 않는 등 △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20조에 따라 종결처리
5	○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신청서 허위 작성 관련 - 천안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신청을 하면서 - 설치 예정 중인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을 바이오가스화로 허위 기재	○ 천안시가 2017년 1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신청을 하면서 처리공법을 바이오가스화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 천안시는 위 사업 신청 당시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을 바이오가스화로 변경 예정 중이었으며 - 실제로 ’18. 5. 21. 금강청으로부터 처리 공법을 바이오가스화로 승인받음 ○ 또한 천안시는 위 사업 선정 결과에서 제외되는 등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청구사항을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20조에 따라 종결처리
6	○ 천안시의 분뇨처리시설 불허가 약속 미이행 - 천안시는 천안시 하수과-16798호(’08년 2월)를 통해 관내 수신면 발산리 지역에 - 분뇨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해당 지역에 위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 천안시는 천안시 하수과-16798호를 통해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한 사실은 없으며 - 분뇨처리시설은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20조에 따라 종결처리